

## IGSE교육원 학습비 반환 기준

구 분	반환 사유 발생일	반환 금액	
IGSE교육원의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	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	학습 기간이 <b>1개월 이내</b> 인 경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수업의 1/3이 지나기 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		수업의 1/2이 지나기 전	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	학습 기간이 <b>1개월을 초과</b> 하는 경우	수업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
		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수업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수업경과에 따른 반환금액(학습 기간 <b>1개월내</b> 기준) + 나머지 달의 학습비를 합산한 금액
비고	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		

(예. 11월 2일에 개강한 주 5일 4주 과정에서 수업시간 1/2선인 11월 13일 해당 강좌 수업시간 개시 이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는 수업 기간 1/2이 지난 것으로 학습비를 반환하지 않습니다. )

(예. 11월 2일에 개강한 주 3일 12주 과정에서 5주차 시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는 그달의 학습비의 2/3의 해당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를 합산하여 반환합니다.)